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1 선고 2017가합517566 판결 [보증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진종합건설 주식회사

피고건설공제조합

변론 종결 2017. 9. 27.

판결 선고 2017. 11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10. 26.부터 2017. 11. 1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9. 2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공사도급계약의 체결

원고는 주식회사 한창산업개발로부터 경기 양평군 A에 있는 B 내 C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후 2014. 11. 27. 주식회사 D(이하 'D'라고 한다)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건축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고 한다)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,487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, 공사기간을 2014. 12. 1.부터 2015. 11. 30.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하도급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7조(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)

① 원고와 D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.

1. D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D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.

1.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,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

⑥ D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제3항 제1호의 보증금 전액에 대해 귀속한다.

⑦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D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D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제23조 (하자담보)

① D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"하자보수보증금"이라 한다)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원고에게 납부한다.

1. 건설공제조합, 전문건설공제조합, 설비공사공제조합,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

제25조 (계약해제, 해지)

① 원고 또는 D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

혹은 해지할 수 있다.

1. 원고 또는 D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2. 부도.파산 등 D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
3. D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

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D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납부한다.

④ 원고 또는 D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나. D와 피고와의 계약보증보험계약 체결

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는 2014. 12. 11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, 보증금액을 220,000,000원, 보증기간을 2014. 12. 5.부터 2015. 11. 30.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D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(이하 '이 사건 보증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.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조 (보증책임)

건설공제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은 계약자(이하 '채무자'라 한다)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 등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'보증사고'라 한다) 그 상대방(이하 '보증채권자'라 한다)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2조(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)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2.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
3. 보증서를 보증목적(주계약내용)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
제3조(보증채무의 이행한도)

①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. 다만,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.

② 제1항에 규정한 실제 손해액에는 지체상금약정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.

제9조(보증금 지급시기)

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,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조합의 보증책임 범위가 확정된 부분은 심사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다. D의 이 사건 공사 중단 등

- 1) D는 2015. 9. 3.경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, 원고에게 공사타절 및 정산을 요청하였다.
- 2) 이에 원고는 2015. 9. 4. D에 대하여 D의 일방적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D의 위 2015. 9. 3.자 공사타절 및 정산요청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, 이는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.

라.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

원고는 2015. 9. 25. 피고에게 D의 부당한 공사 중단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,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12, 13호증, 을 제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보증책임의 발생

1)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,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.

2)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기간 중 D가 2015. 9. 3.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앞서 본 증거에 갑 제6, 14 내지 16호증,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계약금액 2,599,386,220원 중에서 2015. 7. 25.까지 D의 기성금 지급 요청에 따라 2,320,500,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, D는 2015. 8. 18. 원고에게 약 4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기성내역보다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, 원고는 2015. 8. 22. D에 대한 기성금 지급율은 89.3%이나, 실공정율은 72% 내외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공기만회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, D의 기성금 선지급 등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이후 D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기성내역에 따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, 달리 원고가 그 기성금 지급을 지체 또는 미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설계변경이 있어 그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실제 기성율보다 적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따라서 D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, 원고의 D에 대한 2015. 9. 4.자 손해배상청구 및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제출 요청 등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.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D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

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보증책임의 범위

1)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1. 12. 14. 선고 99다58129 판결,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D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만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,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골조공사의 공사대금은 2,599,386,220원이고 원고가 D에 지급한 기성금은 2,320,500,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D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위 계약금액 보다 295,341,831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은 사실, 원고는 D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이후 D가 시공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골조공사를 진행하면서 1,620,301,4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, D의 대표이사인 E은 2015. 10. 30.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1,046,073,349원을 D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D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원고는 D에 대하여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 574,228,051원(= 2,599,386,220원 + 295,341,831원 - 2,320,500,000원)만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,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그보다 1,046,073,349원(=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골조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금액 1,620,301,400원 - 위 미지급 공사대금 574,228,051원)이 더 많은 금액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, 여기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한창산업개발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위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, D 자신도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부담하게 된 공사비

1,046,073,349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, 위 1,046,073,349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액 상당액인 220,000,000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추가공사비 상당의 손해액으로서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인 2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5. 9. 25.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2015. 10. 25.의 다음날인 2015. 10. 26.부터¹⁾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. 11. 1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형훈

판사조실

판사이인민

1) 원고는 보증금 지급 청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, 이 사건 보증계약 제9조는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 청구를 받고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이 결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2015. 9. 25.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7일을 포함하여 보증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2015. 10. 25.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